

개인연금저축
미래연금보험

고려씨엠생명보험주식회사

개인연금저축
미래연금보험(개인계약)

보통보험약관

개인연금저축
미래연금보험(개인계약)보증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길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 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병시
 8. 기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에 정한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에 정한 생존연금이외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보험금수익자로 합니다.

(이하 "연금수익자"와 "보험금수익자"를 합하여 "수익자"라 합니다.)

②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수익자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6조의 2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7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5. 제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 (10회 보증)
6. 피보험자가 장수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수축하금
7. 제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시 제외) : 사망위로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살아있을 때만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한 경우로 합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⑦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이 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⑧ 제7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8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⑩ 제7항 및 제8항의 규장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제 9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을 회사에서 정한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보험금으로 증액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결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의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의 2(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3조(약관대출)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제17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9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사망위로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생존연금 또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 생존연금, 장수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9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 수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한 감면세

액 상당액을 추정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1조의 2(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3조의 2(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제27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과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해약환급금 예스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 원
 가입연령: 55세 형: 35세
 60세 형: 38세
 65세 형: 40세
 납입기간: 전기납(55세, 60세, 65세 납)
 납입방법: 월납

◎ 정액형

경과기간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3,864	11,592	19,320	27,048	38,640	57,960
		해약환급금	344	7,696	16,684	26,379	42,106	76,848
여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432	10,296	17,160	24,024	34,320	51,480
		해약환급금	0	6,153	13,831	22,004	34,889	63,008
	65 세 형	납입보험료	2,892	8,676	14,460	20,244	28,920	43,380
		해약환급금	0	4,305	10,494	16,901	26,514	46,962
남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4,056	12,168	20,280	28,392	40,560	60,840
		해약환급금	617	8,603	18,370	29,054	46,677	85,907
여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492	10,476	17,460	24,444	34,920	52,380
		해약환급금	65	6,818	15,140	24,127	38,635	70,882
	65 세 형	납입보험료	2,772	8,316	13,860	19,404	27,720	41,580
		해약환급금	0	4,485	10,917	17,695	28,220	51,455

◎ 체증형

구 分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4,548	13,644	22,740	31,836	45,480	68,220	
		해약환급금	1,019	9,878	20,609	32,323	51,707	94,803	
	60 세 형	납입보험료	3,912	11,736	19,560	27,384	39,120	58,680	
		해약환급금	350	7,679	16,578	26,165	41,620	75,654	
여 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3,192	9,576	15,960	22,344	31,920	47,880	
		해약환급금	0	5,235	12,168	19,439	30,622	54,710	
	60 세 형	납입보험료	4,895	14,688	24,480	34,272	48,960	73,440	
		해약환급금	1,450	11,293	23,208	36,375	58,479	107,807	
	65 세 형	납입보험료	4,116	12,348	20,580	28,812	41,160	61,740	
		해약환급금	681	8,808	18,719	29,544	47,372	87,122	
	65 세 형	납입보험료	3,180	9,540	15,900	22,260	31,800	47,700	
		해약환급금	0	5,786	13,258	21,239	33,938	62,097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보험의 세 목	보 험 기 간	
	제 1 보험기간	제 2 보험기간
55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5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5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60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6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65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6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2. 보험금 지급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사망 보험금 (약관 제 8조 제 1항 제 1호)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 8조 제 1항 제 2호)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 8조 제 1항 제 3호)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장해급여금 (약관 제 8조 제 1항 제 4호)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2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 3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 4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5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6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
생존연금 (약관 제 8조 제 1항 제 5호)	제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정액형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씩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1차년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2차년도 이후 매년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5%씩 체증하 여 지급 (10회 보증지급) 단, 11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씩 지급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수 축하금 (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	피보험자가 장수축하금 지급 해당일(만60세(55세형), 또는 만65세(60세형), 만70세, 만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지급시기</th><th>55세형</th><th>60세형</th><th>65세형</th></tr> </thead> <tbody> <tr> <td>만60세</td><td>15%</td><td>-</td><td>-</td></tr> <tr> <td>만65세</td><td>-</td><td>15%</td><td>-</td></tr> <tr> <td>만70세</td><td>25%</td><td>25%</td><td>25%</td></tr> <tr> <td>만80세</td><td>50%</td><td>50%</td><td>50%</td></tr> </tbody> </table>	지급시기	55세형	60세형	65세형	만60세	15%	-	-	만65세	-	15%	-	만70세	25%	25%	25%	만80세	50%	50%	50%
지급시기	55세형	60세형	65세형																			
만60세	15%	-	-																			
만65세	-	15%	-																			
만70세	25%	25%	25%																			
만80세	50%	50%	50%																			
사망 위로금 (약관 제8조 제1항 제7호)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주) 1. 생존연금의 경우 10회의 보증지급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0회까지
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이 보험의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재해 및 질병 분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콘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나만,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형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아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교통재해신고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볼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해 등급 분류 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p>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4. 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제 2 급	<p>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p>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p> <p>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제 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p> <p>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p> <p>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최초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4급	<p>1. 두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 급	신 체 장 해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p> <p>5.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나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 5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6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장 해 등급 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ㄴ, ㄷ, ㅌ),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등 급	신 체 장 해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나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즉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복)의 완전장작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의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 굽하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판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판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발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판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판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1,2,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개인연금저축

미래연금보험(부부계약)

보통보험약관

개인연금저축 미래연금보험(부록제약)보증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성)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인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간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 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병시

8. 기타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 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6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에 정한 주피보험자 생존시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에 정한 주피보험자 생존시 생존연금이외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보험금수익자로 합니다.

(이하 "연금수익자"와 "보험금수익자"를 합하여 "수익자"라 합니다.)

②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계약자는 주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7조의 2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5. 제 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존연금 (10회 보증)
6.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장수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수축하금

7. 제 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시 제외):사망위로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살아있을 때란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한 경우로 합니다.
-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⑦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⑧ 제7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8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⑩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 제10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

을 회사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보험금으로 증액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동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험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7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4조(약관대출)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제18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6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3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사망위로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제9조(보험금의 지급 자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생존연금 또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 생존연금, 장수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급 자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금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한 감액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2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주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흘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 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청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 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뛰어 드립니다.

제24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4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험증권의 제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제28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과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해 약 환급금 예시 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 10만 원	
가입연령	55세 형 : 주피보험자 35세 60세 형 : 주피보험자 38세 65세 형 : 주피보험자 40세
납입기간 : 전기납 (55세, 60세, 65세 납)	
납입방법 : 월납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 정액형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4,812	14,436	24,060	33,684	48,120	72,180	
		해약환급금	1,127	10,177	21,049	32,819	51,983	92,756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4,524	13,572	22,620	31,668	45,240	67,860	
		해약환급금	783	9,022	18,882	29,438	46,199	81,065	
	65 세 형	납입보험료	4,032	12,096	20,160	28,224	40,320	60,480	
		해약환급금	244	7,275	15,712	24,570	38,143	65,732	
	55 세 형	납입보험료	4,932	14,796	24,660	34,524	49,320	73,980	
		해약환급금	1,153	10,234	21,106	32,899	52,087	93,289	
	60 세 형	납입보험료	4,620	13,860	23,100	32,340	46,200	69,300	
		해약환급금	741	8,879	18,615	28,987	45,448	80,305	
	65 세 형	납입보험료	4,092	12,276	20,460	28,644	40,920	61,380	
		해약환급금	151	6,949	15,064	23,518	36,544	63,385	

◎ 채증형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5,736	17,208	28,680	40,152	57,360	86,040
		해약환급금	2,027	13,078	26,249	40,660	64,534	115,684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5,244	15,732	26,220	36,708	52,440	78,660
		해약환급금	1,480	11,263	22,894	35,477	55,838	98,599
남 자	65 세 형	납입보험료	4,536	13,608	22,680	31,752	45,360	68,040
		해약환급금	728	8,829	18,491	28,746	44,794	77,797
여 자	55 세 형	납입보험료	5,868	17,604	29,340	41,076	58,680	88,020
		해약환급금	2,046	13,113	26,268	40,691	64,585	116,288
남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5,340	16,020	26,700	37,380	53,400	80,100
		해약환급금	1,416	11,054	22,510	34,856	54,844	97,571
여 자	65 세 형	납입보험료	4,572	13,716	22,860	32,004	45,720	68,580
		해약환급금	605	8,409	17,673	27,445	42,825	74,907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보험의 세 목	보 험 기 간	
	제 1 보 험 기 간	제 2 보 험 기 간
55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5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5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60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6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65세 형	계약일로부터 만 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만 6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주) 상기연령은 주피보험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2. 보험금 지급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사망 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종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종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종피보험자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장해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 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 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6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씩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1차년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2차년도 이후 매년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0.5% 씩 체증하여 지급 (10회 보증지급) 단, 11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씩 지급			
	제2보험기간이 시작 되는 날에 종피보험 자만 살아 있을 때	정액형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7% 씩 지급 (10회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이 시작 되는 날부터 만 10 년 경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 보험자만 살아 있을 때		체증형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를 지급 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35% 씩 체증하 여 지급 (10회 보증지급)			
		정액형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 씩 지급			
장수축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6호)	주피보험자가 장수축하금 지급 해당일(주피보험자연령이 만 60세(55세형), 만 65세(60세형), 만 70세, 만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체증형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5% 씩 지급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지급시기	55세형 60세형 65세형			
		만 60세	15%	—	—	
		만 65세	—	15%	—	
		만 70세	25%	25%	25%	
		만 80세	50%	50%	50%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지급시기	55세형 60세형 65세형			
		만 60세	10.5%	—	—	
		만 65세	—	10.5%	—	
		만 70세	17.5%	17.5%	17.5%	
		만 80세	35%	35%	35%	
사망 위로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7호)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 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상태 제외)	주피보험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종피보험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주) 1. 생존연금의 경우 10회의 보증지급기간중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 2)

제 2) 손상 및 중독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 - E 845
7. 다른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콘돌라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劑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범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 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교통재해 보험 조항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타보트, 브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 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농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볼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정·해 등급 분류 표

등급	신체 장해
제 1 급	<p>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2. 말 또는 쌍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p> <p>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제 2 급	<p>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p>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p> <p>4.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제 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p> <p>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p> <p>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4급	<p>1. 두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급	신체장애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흥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p> <p>5. 한풀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 5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두귀의 청력을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10. 코가 절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6 급	<p>1.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 해 등급 판정 기준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ㄴ, ㄷ, ㅌ),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

즉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 이상 (첫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колян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의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판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판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질간판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발가락은 지질간판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분류표 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1,2,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